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분류번호	01	채용분야	건축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 주요업무**
- 청사 건립(공사감독),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건축 관련 업무
  -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지도 감독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u>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td> </tr> <tr> <td rowspan="3">선택자격</td> <td>기술사</td> <td>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td> </tr> <tr> <td>기능장</td> <td>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td> </tr> <tr> <td>기사</td> <td>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u>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table border="1"> <tr> <td>▶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td> </tr> <tr> <td>*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td> </tr> <tr> <td>「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td> </tr> <tr> <td>「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td> </tr> <tr> <td>▶ 인정 실무경력</td> </tr> <tr> <td>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1에 따라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②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 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td> </tr> <tr> <td>④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td> </tr> </table>	기본자격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선택자격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인정 실무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1에 따라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②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 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④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기본자격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선택자격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인정 실무경력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1에 따라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②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 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④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b>② 경력</b>	■ 해당없음																			
<b>③ 학위</b>	<p>■ <u>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p> <p>*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p>																			
<b>비고</b>	(경기) 청사 신축, 관리 관련부서에 배치																			

분류번호	02	채용분야	구급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재난현장에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 구급의료지도, 항공구급대원, 안전체험관 교관, 교육대 교관, 구급 행정업무 수행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sup>1)</sup> 또는 간호업무<sup>2)</sup> 경력이 있는 사람**
-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자격증**
- 기본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선택자격: 의사면허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sup>1)</sup>·사회복무요원<sup>2)</sup>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2) 사회복무요원포탈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 류 번 호	03	채 용 분 야	구급상황관리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①																			
경 력 ②									②										
학 위 ③																			

- 주 요 업 무**
- 응급처치 상담, 병·의원 안내 및 질병 상담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그중 5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b></li> </ul> <p><small>*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small></p>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04	채용분야	구조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활동</li> <li>○ 소방(구조) 장비의 관리, 운용 및 물품관리</li> <li>○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li> </ul>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b>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li> </ul> </li> <li>○ 특수부대 인정 범위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육군) 육군특전사, 정보사,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수색대대, 연대수색중대, 특공연대·대대,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제1산악여단, 기동대대, 연대기동중대,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정찰중대(구.기계화사단정찰대)</p> <p>(공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p> <p>(해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p> <p>(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p> <p>(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24특임대대</p> <p>(기타 특수부대) 그 외 특수부대 근무경력자</p> </div> </li> <li>○ 특수부대 근무경력 인정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li> <li>- 군별 특수부대 복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군별</th> <th>제출서류</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육군</td> <td>군경력증명서</td> <td>육군본부 병적민원과, 병무청, 정부24</td> </tr> <tr> <td>해군</td> <td>군경력증명서의 "기타"란에 추가 입력</td> <td>해군 일자리정책과</td> </tr> <tr> <td>공군</td> <td>군경력증명서의 "그 밖의 사항"란에 추가 입력</td> <td>공군 전직지원정책과</td> </tr> <tr> <td>해병대</td> <td>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td> <td>해병대사령부 복지 전직지원처</td> </tr> </tbody> </table> </li> </ul>	군별	제출서류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육군본부 병적민원과, 병무청, 정부24	해군	군경력증명서의 "기타"란에 추가 입력	해군 일자리정책과	공군	군경력증명서의 "그 밖의 사항"란에 추가 입력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해병대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해병대사령부 복지 전직지원처
군별	제출서류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육군본부 병적민원과, 병무청, 정부24														
해군	군경력증명서의 "기타"란에 추가 입력	해군 일자리정책과														
공군	군경력증명서의 "그 밖의 사항"란에 추가 입력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해병대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해병대사령부 복지 전직지원처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비고																

분류번호	05	채용분야	구조(수난)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각종 수난 현장활동 ○ 구조(수난)장비의 관리, 운용 및 물품관리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p>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p> <p>○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수중관련 현장업무(CCTV관리, 검사, 수리, 천공, 굴착, 용접, 절단, 인양, 방수, 클리닝, 토목공사, 프로펠러 폴리싱 등)</p> <p>② 잠수 기능원(잠수부, 선박구난 및 잠수요원) 업무(단, 단순 관광·레저활동 종사, 수렵·채취 등 어업, 잠수장비 관리, 행정 및 시설관리 업무 등 제외)</p>								
	<p>■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특수부대 인정 범위</p> <p>① 해군 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          ② 해군 정보부대(UDU)          ③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p> <p>○ 특수부대 근무경력 인정 제출서류</p> <p>-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          - 군별 특수부대 복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군별</td> <td>확인서</td> <td>발급처</td> </tr> <tr> <td>해군</td> <td>군경력증명서의 "기타"란에 추가 입력</td> <td>해군 일자리정책과</td> </tr> <tr> <td>해병대</td> <td>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td> <td>해병대사령부 복지 전직지원처</td> </tr> </table>	군별	확인서	발급처	해군	군경력증명서의 "기타"란에 추가 입력	해군 일자리정책과	해병대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군별	확인서	발급처							
해군	군경력증명서의 "기타"란에 추가 입력	해군 일자리정책과							
해병대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해병대사령부 복지 전직지원처							
② 경력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6	채용분야	기계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소방시설 민원 업무 및 화재조사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기계설계, 일반기계</td> </tr> <tr> <td rowspan="3">선택자격</td> <td>기술사</td> <td>기계</td> </tr> <tr> <td>기능장</td> <td>기계가공</td> </tr> <tr> <td>기사</td> <td>기계설계, 일반기계</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기계설비 설계, 기계설비 공사, 기계설비 유지, 기계설비 운용, 기계설비 점검</p> <p>②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p> </div>	기본자격	산업기사	기계설계, 일반기계	선택자격	기술사	기계	기능장	기계가공	기사	기계설계, 일반기계
	기본자격	산업기사	기계설계, 일반기계								
선택자격	기술사	기계									
	기능장	기계가공									
	기사	기계설계, 일반기계									
<p>② 경력</p> <p>■ 해당없음</p>											
<p>③ 학위</p> <p>■ 해당없음</p>											
<p>비고</p>											

분류번호	07	채용분야	법무
시험절차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경
필기시험과목	해당없음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관련 업무 지원 및 처리
- 소청,소송 등 법률 자문 및 손실보상 운영, 처리
- 소방활동 방해(폭행 등) 사법수사 지원 및 특별감찰 등
- 소방 관계법령 제·개정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08	채용분야	소방(자격)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 </tr> <tr> <td rowspan="3">선택자격</td> <td>기술사</td> <td>소방</td> </tr> <tr> <td>관리사</td> <td>소방시설</td> </tr> <tr> <td>기사</td> <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p> <p>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p> <p>③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p> </div>	기본자격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선택자격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기본자격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선택자격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b>② 경력</b>	■ 해당없음										
<b>③ 학위</b>	■ 해당없음										
<b>비고</b>	(경기)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 배치										

분류번호	09	채용분야	소방(자격)
시험절차	필기,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장
필기시험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 주요업무**
-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u>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기술사</td> <td>소방</td> </tr> <tr> <td>관리사</td> <td>소방시설</td> </tr> </table> </li> <li>○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ul> </li> <li>▶ 인정 실무경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li> <li>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li> <li>③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li> </ol> </li> </ul> </div> </li> </ul>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b>② 경력</b>	■ 해당없음				
<b>③ 학위</b>	<p>■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p>				
<b>비고</b>	(경기)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 배치				

분류번호	10	채용분야	소방(학위)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 주요업무**
-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 해당없음
<b>② 경력</b>	■ 해당없음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전문 포함)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관계법령 및 서식 참고 6】</li> <li>■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관계법령 및 서식 참고 6】</li> </ul>
<b>비고</b>	(서울, 경기)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배치

분류번호	11	채용분야	소방정(기관사)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소방정 운영과 관리, 해상 인명구조 활동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4급 이상의 <u>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u></li> <li>※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12	채용분야	소방정(항해사)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소방정 운영과 관리, 해상 인명구조 활동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13	채용분야	심리상담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②					②				②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현장활동 소방대원 등 심리상담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li> <li>※ 근무(연구)경력은 심리상담 연구·조사·분석,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실무경력에 한함</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14	채용분야	안전관리(가스)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호흡보호장비 정비 분야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가스</td> </tr> <tr> <td>기능사</td> <td>가스</td> </tr> <tr> <td rowspan="3">선택자격</td> <td>기술사</td> <td>가스</td> </tr> <tr> <td>기능장</td> <td>가스</td> </tr> <tr> <td>기사</td> <td>가스</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가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p> <p>②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안전관리분야(가스)”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p> </div>	기본자격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가스	선택자격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기본자격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가스											
선택자격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② 경력	<p>■ 해당없음</p>												
③ 학위	<p>■ 해당없음</p>												
비고													

분류번호	15	채용분야	안전관리(예방)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소방서 화재조사전담부서 배치,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화학,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분야 채용 특기를 활용한 화재 원인 규명 업무
  - 화재조사 장비의 활용과 유지·관리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기본자격</td> <td style="width: 15%;">산업기사</td> <td>가스,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td> </tr> <tr> <td></td> <td>기술사</td> <td>소방, 가스,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td> </tr> <tr> <td rowspan="2">선택자격</td> <td>기능장</td> <td>가스, 전기, 건축일반시공</td> </tr> <tr> <td>관리사</td> <td>소방시설관리사</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p> <p>② (전기) 전기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회로의 개발(응용)</p> <p>③ (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1에 따라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li> <li>-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li> </ul> <p>④ (가스)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p> </td> </tr> </table>	기본자격	산업기사	가스,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기술사	소방, 가스,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선택자격	기능장	가스, 전기, 건축일반시공	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p> <p>② (전기) 전기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회로의 개발(응용)</p> <p>③ (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1에 따라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li> <li>-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li> </ul> <p>④ (가스)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p>
	기본자격	산업기사	가스,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기술사	소방, 가스,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선택자격	기능장	가스, 전기, 건축일반시공										
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p> <p>② (전기) 전기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회로의 개발(응용)</p> <p>③ (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표1에 따라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li> <li>-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li> </ul> <p>④ (가스)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p>													
<p>② 경력</p> <p>■ 해당없음</p>													
<p>③ 학위</p> <p>■ 해당없음</p>													
<p>비고</p>													



분류번호	16	채용분야	안전관리(화재조사)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 주요업무**
- 소방서 화재조사전담부서 배치,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화학,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분야 채용 특기를 활용한 화재 원인 규명 업무
  - 화재조사 장비의 활용과 유지·관리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화학분야	화공기술사, 정밀화학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기계분야	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전자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안전관리분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자격증**

- ▶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 인정 실무경력
  - ① (화학) 화학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②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③ (전기·전자) 전기·전자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전자 회로의 개발(응용), 전자 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④ (안전관리) 가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가스기기·설비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과, 전기과·전기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비고**

(서울)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근무

분류번호	17	채용분야	언론공보(콘텐츠)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이미지(웹디자인 등)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촬영, 편집)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li> <li>※ 근무경력은 디지털콘텐츠(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과 관련된 실무경력에 한함.</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18	채용분야	언론공보(홍보)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소방활동 및 주요 정책 등 언론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및 뉴미디어 홍보콘텐츠 진행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li> <li>※ 근무경력은 방송·언론·신문 등 관련 보고·작성·원고정리 및 진행·취재·각종 정보 전달 등 홍보 관련 실무경력에 한함.</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19	채용분야	의무소방전역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②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화재진화, 인명구조, 구급활동, 민원, 예방, 장비 관리 운용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전역이 예정된 사람</li> <li>※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함</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20	채용분야	자동차 운전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강원 실기 추가 시행)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 업무**
- 소방차 운전 및 조작, 일상점검 및 정비 등
  - 소방차 현장 활동을 위한 차량 상태 유지 및 행정 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
  - 기타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각종 사무에 관한 처리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b>자격증(면허증)</b>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b>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b>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격증(면허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대형운전면허</li> </ul> </li> <li>○ <b>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경력</b>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li> <li>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li> <li>③ 건설기계(화물적재공간이 있는 건설기계는 적재중량 12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li> </ul> </li> <li>④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1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변경 승인 전 또는 후의 기준을 적용하되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은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li> <li>⑤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2에 따라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 화물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li> <li>⑥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3에 따라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견인하는 자동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li> <li>⑦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li> <li>※ 도로교통법 개정('18.4.25.) 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li> </ul> </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② 경력</b>	■ 해당없음
<b>③ 학위</b>	■ 해당없음
<b>비고</b>	

분류번호	21	채용분야	자동차 정비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소방차량 정비와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군 경력은 제외)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선택자격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2(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업무 근무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22	채용분야	전기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전기화재 감식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주요 전기·전자 시험기기 관리 업무
  - 전기적인 요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 원인 규명을 위한 전기 기기 재현실험 등
  -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및 시설물 관리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선택자격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① **자격증**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 인정 실무경력
  - ① 전기설비 설계, 전기설비 공사, 전기설비 유지, 전기설비 운용, 전기설비 점검, 전기설비 감리
  - ②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전기분야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 ② **경력** ■ 해당없음

-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대전)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배치

분류번호	23	채용분야	전기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교
필기시험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③										

- 주요업무**
- 국가 공인시험기관(KOLAS)인정 추진 및 유지 업무
  - 전기화재 감식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주요 전기·전자 시험기기 관리 업무
  - 전기적인 요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 원인 규명을 위한 전기 기기 재현실험 등
  -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및 시설물 관리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b>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기</td> </tr> </table>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기·전자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② 전기·전자 회로의 개발(응용), 전자·전자 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③ 컴퓨터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설치·운용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li> </ul> </li> </ul> </div>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기능장	전기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기능장	전기				
<b>② 경력</b>	<p>■ 해당없음</p>				
<b>③ 학위</b>	<p>■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p>				
<b>비고</b>	<p>(서울)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관련부서 배치</p> <p>(경기) 화재조사 관련부서 배치</p>				



분류번호	24	채용분야	전기
시험절차	필기,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장
필기시험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 주요업무**
- 전기화재 감식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주요 전기·전자 시험기기 관리 업무
  - 전기적인 요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 원인 규명을 위한 전기기기 재현실험 등
  -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및 시설물 관리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u>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기술사</td> <td>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기</td> </tr> </table> </li> <li>○ 경력요건: <u>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ul> </li> <li>▶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기설비 설계, 전기설비 공사, 전기설비 유지, 전기설비 운용, 전기설비 점검, 전기설비 감리</li> </ul> </li> </ul> </div> </li> </ul>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전기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기능장	전기				
<b>② 경력</b>	■ 해당없음				
<b>③ 학위</b>	<p>■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u>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p> <p>*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p>				
<b>비고</b>					

분류번호	25	채용분야	정보통신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지휘센터 유.무선 통신장비 운영, 소방서 정보통신 업무
  - 종합상황실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관리팀 배치
  -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래밍 개발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선택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 인정 실무경력
  - ① S/W개발부서 및 D/B설계·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 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 ③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
  - ④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26	채용분야	정보통신(빅데이터)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 데이터기반의 소방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분석
- 재난 대응전략 수립 및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r> <td rowspan="2">선택자격</td>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사</td> <td>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 인정 실무경력</li> <li>①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응용, 빅데이터 융합, 빅데이터 관리</li> </ul> </td> </tr> </table>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선택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 인정 실무경력</li> <li>①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응용, 빅데이터 융합, 빅데이터 관리</li> </ul>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선택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 인정 실무경력</li> <li>①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응용, 빅데이터 융합, 빅데이터 관리</li> </ul>										
<p>■ 해당없음</p>										
<b>② 경력</b>	■ 해당없음									
<b>③ 학위</b>	■ 해당없음									
<b>비고</b>										

분류번호	27	채용분야	항공(운항관제)
시험절차	실기,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교
필기시험과목	해당없음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리콥터 관제 업무 등</li> <li>○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li> </ul>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안전법」에 따른 <u>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u> 관련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28	채용분야	항공(정비)
시험절차	실기,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장
필기시험과목	해당없음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헬리콥터 정비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	--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안전법」에 따른 헬리콥터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u>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29	채용분야	항공(조종)
시험절차	실기,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위
필기시험과목	해당없음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헬리콥터 조종 업무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li> <li>○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li> </ul> </li> <li>○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비행시간을 말함(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li> <li>※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li> </ul> </li> <li>②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비행경력이 있는 자</li> <li>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li> <li>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헬리콥터)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일 경우「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4(계기비행증명)에 따르며,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li> </ul> </li> <li>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자격증명 소지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② 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비고</b>	

분류번호	30	채용분야	화학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①								①	①				①
경력 ②	②	②												②					②
학위 ③	③					③									③				

- 주요업무**
-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td> </tr> <tr> <td rowspan="3">선택자격</td> <td>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선택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기본자격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선택자격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본자격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선택자격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p> <p>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p> <p>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p> </td> </tr> </table>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p> <p>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p> <p>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p>										
<p>▶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p> <p>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p> <p>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p>											
② 경력	<p>■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 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화학부대: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p>										
③ 학위	<p>■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p>										
비고											

분류번호	31		채용분야	화학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교																
필기시험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주요업무	○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b>② 경력</b>	
<b>③ 학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li> </ul>
<b>비고</b>	(경기)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배치



분류번호	32	채용분야	화학
시험절차	필기,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장
필기시험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①					
경력 ②																			
학위 ③														③					

- 주요업무**
-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b>① 자격증</b>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인정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사      화공</li> </ul> </li> <li>○ 경력요건: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따르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li> <li>▶ 인정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학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li> <li>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li> <li>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li> </ul> </li> </ul> </li> </ul>
<b>② 경력</b>	<p>■ 해당없음</p>
<b>③ 학위</b>	<p>■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b>박사학위</b>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p>
<b>비고</b>	

분류번호	33	채용분야	회계
시험절차	필기, 체력,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예산집행 및 세출자금 배정 등 ○ 일상경비 운영 및 채권.채무 관리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sup>1)</sup>)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sup>2)</sup>이 1년 이상인 사람</li> <li>1)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회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근무(연구)경력은 회계관련 실무경력에 한함</li> </ul>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비고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